

궁궐·왕릉 등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임오경·서영교·황명선
박해철·김재원·朴芝源
조계원·맹성규·임미애
최민희·문정복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·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.

그 중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주요 문화유산 중 궁궐 및 왕릉에 관한 사항은 보존·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

가 소홀하고,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
다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8조).

라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마.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 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2조).

바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, 시설물관리, 소방, 조정 등 보존·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, 화재, 풍수해, 재난,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·분석과 판단·전파,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.

사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·관리·교육·해설·홍보·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궁능문화유산 활용, 홍보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.

아.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정보·기술교류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, 남북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조사·연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 및 제20조).

궁궐·왕릉 등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궐 및 왕릉 등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궁능문화유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말한다.

1. 경복궁, 창덕궁, 덕수궁, 창경궁, 종묘
2.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조선왕릉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문화유산으로서 단(壇), 묘(廟), 궁(宮), 능(陵), 원(園), 묘(墓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3조(궁능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이념) ① 궁능문화유산은 역사성과 정통성이 보존되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며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한다.

②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은 궁능의 존엄을 유지하고, 역사적 배치 체계와 공간 구성, 전통적 경관과 조경, 전통적 궁능

생활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궁능문화유산에 재연(再演)되거나 소재하는 무형유산과 자연유산, 근현대문화유산은 통합적·체계적·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.

④ 궁능문화유산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세대에 궁능문화유산의 가치가 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민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②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

것을 제외하고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2장 궁능문화유산 보호 기반 조성

제6조(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의 수립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 계획 및 추진
3.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
4. 궁능문화유산 관련 조사·연구
5. 궁능문화유산 관련 교육·홍보
6. 그 밖에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

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궁능문화유산의 정기점검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궁능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원형, 역사적 변천, 가치 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0조(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사·연구 결과 등의 자료와 그 밖의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·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·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및 복원

- 제11조(주요시책 등의 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

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,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복원)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(궁능문화유산 보존·관리 전담조직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, 시설물관리, 소방, 조경 등 보존·관리를 위하여 보존·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화재, 풍수해, 재난,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·분석과 판단·전파,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주민 등의 의견수렴)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중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

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, 이해관계자, 관계 전문가,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4장 궁능문화유산의 활용 및 진흥

제16조(궁능문화유산 교육 및 홍보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홍보하고, 대중이 궁능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궁능문화유산에서의 제향, 봉행, 전시, 공연 등의 재연 및 개최
2. 궁능문화유산의 역사·문화 등에 대한 안내, 강연, 관람, 체험 등
3. 궁능문화유산 또는 그 가치를 상징하는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 사업
4. 궁능문화유산 관련 근현대문화유산,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 사업
5.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
6. 그 밖에 궁능문화유산의 향유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

사업

③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·관리·교육·해설·홍보·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을 양성하고, 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 내용·과정·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활용,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궁능문화유산에서 제향 또는 봉행
2.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
3. 궁능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4. 궁능문화유산의 홍보 및 교육
5. 궁능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활성화
6. 궁능문화유산축전 등 전시 및 축제
7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
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,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국제 교류·협력)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,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정보·기술 교환, 전문인력 교류, 공동 조사·연구,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20조(남북 궁능문화유산의 교류) ① 국가는 남북의 궁능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유산청장은 남북의 궁능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궁능문화유산 보호,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·연구할 수 있다.

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·협력사업과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21조(관계기관의 협조)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·보존·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·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